



: 2019-01-30

서울 행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734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
피 고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5. 17.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B에서 2017. 11. 27.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는 2012. 9. 28. 의류·잡화 제조업, 의류·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0. 16. C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11. 30. [REDACTED] 구 D 대 195㎡, E 대 337㎡, F 대 93㎡, G 대 205㎡, H 전 10㎡ 및 그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 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세 115,049,500원, 지방교육세 11,504,950원, 농어촌특별세 5,752,470원 합계 132,306,92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2. 2.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증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¹⁾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214,600원, 지방교육세 23,410원, 농어촌특별세 9,750원 합계 247,76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30.부터 2016. 4. 15.까지 원고에 대한 지방세 지도점검을 한 후 원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10. 7.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628,055,360원, 지방교육세 94,038,270원, 농어촌특별세 15,786,400원, 취득세 가산세 90,583,96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8,886,61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491,810원 합계 838,842,41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증축과 관련한 취득세 563,220원, 지방교육세 54,110원, 농어촌특별세 29,260원, 취득세 가산세 88,250원, 지

1) 이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나 내용은 동일하다.



방교육세 가산세 3,0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650원 합계 739,5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창업 요건 충족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바, ① 원고의 대표자인 I이 운영하였던 'J'라는 개인사업체(이하 'J'라 한다)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기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원고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J나 K와 원고는 매출액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본점 소재지도 다르고, 원고 설립 이후 직원 수가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중과세율 적용 관련

원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사업체와 원고를 동일하게 보아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인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를 기존의 사업체와 동일한 사업체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3조 등



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 중 중과세율 적용 부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고용창출 및 경기활성화라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 및 원고의 설립으로 인하여 고용이 증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자 I은 2012. 12.경 현재 원고 발행주식 72,000주 중 66,000주 (91.67%)를 보유하고 있다.

2) 한편, I은 다음 표와 같이 개인 사업자등록 및 폐업을 하였다.

연번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록일자	폐업일자	소재지
1	L	M	1998. 4. 9.	1999. 2. 22.	서울 중구 N건물 1층
2	O	M	1999. 2. 26.	2001. 10. 16.	서울 중구 P건물
3	Q	M	1999. 11. 18.	2000. 5. 19.	의정부시 R상가 2층
4	L	M	2002. 2. 26.	2003. 12. 31.	서울 중구 P건물
5	Q	M	2002. 5. 23.	2002. 9. 30.	서울 중구 S시장
6	O	M	2004. 5. 23.	2005. 1. 31.	서울 중구 T건물 지하1층 U호
7	Q	M	2004. 7. 2.	2009. 6. 30.	서울 중구 S시장
8	L	V	2005. 10. 24.	2006. 6. 5.	서울 종로구 W건물
9	O	X	2006. 8. 1.	2009. 6. 30.	서울 중구 Y건물 Z동 2층
10	L	J	2011. 12. 5.	2013. 2. 21.	서울 중구 AA건물 4층 AB호

K는 2007. 3. 30. 의류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는 서울 중구 Y, Z동 2층이었다가 2009. 11. 1. 서울 중구 AC, 4층(도로명 주소: 서울 중구 AD, 4층)으로 변경되었고, 2015. 6. 9. 폐업되었으며, I은 그 대표이사로서 2011. 11. 16. 현재 K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9,000주(90%)를 보유하고 있다.

3) 원고, J, K의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출액 등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원)

연도	원고	K	J
2007		340,964,773	
2008		297,354,976	
2009		1,092,173,652	
2010		2,561,592,200	
2011		2,214,266,073	2,468,000
2012	805,595,000	2,739,416,491	367,658,500
2013	12,548,705,548	16,434,459	
2014	16,180,465,534		
2015	14,706,651,157		

4) 원고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원고의 연혁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와 K의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 전화번호(AE)는 동일하다.

1998. 4. M 설립
2002. 5. FAST WEAR 'V' 설립 'V' 상표등록
2006. 8. 'X' 인터넷쇼핑몰 오픈
2006. 12. 도매업체 'AF' 인수 M 합병
2007. 3. K 법인 설립
2007. 5. AG 브랜드 런칭
2008. 3. 중국 광주 직영매장 오픈
2012. 7. AH 매장 오픈
2012. 10. K에서 원고로 사명 변경
2012. 11. 구리 대규모 생산라인 설비
2014. 7. R&D CENTER 오픈 / AI 매장 오픈

5) K 직원 변동 현황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01-30

연번	성명	입사일		비고
		K	원고	
1	I	2007. 6. 1.	2012. 11. 1.	
2	AJ	2007. 6. 1.	2013. 1. 2.	
3	AK	2010. 12. 31.	2013. 1. 2.	
4	AL	2010. 3. 1.	2013. 1. 2.	
5	AM	2011. 12. 1.	2013. 2. 14.	
6	AN	2012. 4. 1.	2013. 4. 1.	
7	AO	2012. 4. 1.	2013. 1. 2.	
8	AP	2012. 1. 1. ²⁾	2012. 11. 1.	
9	AQ	2012. 1. 1. ³⁾		K에서 퇴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7, 18, 20호증, 을 제2, 4 내지 9,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창업 해당 여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특례규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3항으로 신설되었고, 이후 개정을 거듭하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창업

2) AP은 K에서 2012. 2. 29.까지 근무하였다.

3) AQ은 K에서 2012. 2. 29.까지 근무하였다.



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특례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20조 제3항의 '창업'의 의미에 관하여 제6조 제6항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위와 같은 규정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본문 제2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갑 제12, 16, 18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이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으로 보일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과점주주인 I은 1998년경부터 의류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를 2012. 9. 28. 설립하였는데, 그 무렵에는 J라는 개인사업체와 K를 운영하고 있었다.

② K의 목적사업인 '의류 도·소매업, 제조업 등'과 원고의 목적사업인 '의류·잡화 제조업, 의류·잡화 도·소매업 등'은 그 성질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설립된 다음해인 2013년에는 K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J의 폐업이 이루어진 점, 원고의 2013년도 매출처 중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S, 주식회사 AT 등은 K가 2012년도에 거래한 업체이고, J의 2012년 매출액 중 원고가 2013년도에 거래한 업체와의



매출액의 비중이 약 35퍼센트 정도이며, 원고의 2013년도 매출처 중 AU, AV, 주식회사 AW 등도 J가 2012년도에 거래한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K나 J의 영업 및 거래처의 상당 부분이 원고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③ K의 직원 중 대부분이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승계된 점, 원고의 홈페이지에 K와 동일한 전화번호가 있고, 원고의 홈페이지에 있는 연혁 중 2012. 10. K에서 원고로 사명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K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새로이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K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하지 않았고, K나 J와 비교하여 매출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직원의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연혁이나 K의 목적사업에도 제조업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K도 M과 같은 브랜드를 기획한 후 그 제작을 위탁하고 제조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등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공장을 임차한 시기는 2013. 10. 8. 및 2015. 10. 21.이므로 원고의 설립일인 2012. 9. 28.경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제조만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매출액의 상승과 직원 수의 증가는 기존사업 확장의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중과세율 적용 여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취득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2. 9. 28.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서 설립되었고 5년 이내인 2015. 11. 30. 서울 동대문구 AX동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6. 2. 2.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증축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를 기존의 사업체인 J나 K와 동일한 사업체로 보아 그 설립일을 원고의 설립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킬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본문 제2호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의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해당 여부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창업에 대한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3. 10. 8. 및 2015. 10. 21. 제조공장을 임차하였고 생산직 직원을 포함하여 여러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기는 하였지만, K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제조업이 포함되었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 중 '업태: 제조업, 종목: 기성복(남여소아), 셔츠, 작업복, 내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원고의 연혁에도 K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조업에 대한 창업을 하였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 이라고 보인다.

③ 원고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던 점, 피고의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에는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내지 제53조의 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사항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설립된 이후 J와 K의 매출이 급격하게



: 2019-01-30

감소하였고 K의 직원 상당수가 원고로 소속이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강동훈

판사 김주성



: 2019-01-30

[표]

(단위 : 원)

순번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가산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계
1	628,055,360	94,038,270	15,786,400	90,583,960	8,886,610	1,491,810	838,842,410
2	563,220	54,110	29,260	88,250	3,060	1,650	739,550
합계	628,618,580	94,092,380	15,815,660	90,672,210	8,889,670	1,493,460	839,581,960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



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 지방세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